

# 춘천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1. 공급개요 및 규모

- 공급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762세대 중 일반분양 390세대[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대상 세대수 : 총 74세대

※ [구분 : ( )는 예비추천세대임 / 단위 : m<sup>2</sup>, 세대]

구분		84A	84B	84C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강원도)	9(4)	9(4)	1(1)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9(4)	9(4)	1(1)
	장기복부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4(2)	4(2)	-
	중소기업근로자	6(2)	6(2)	1(1)
	10년 이상 장기복부 군인	7(3)	7(3)	1(1)
<b>계</b>		<b>35(15)</b>	<b>35(14)</b>	<b>4(4)</b>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제외(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m<sup>2</sup>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3. 특별공급 일정 및 선정 방법

#### ■ 공급일정(예정)

구분	일자	장소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10.08.(금)	-
신청일자	2021.10.18.(월) [08:00 ~ 17:30]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당첨자 발표	2021.10.26.(화)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계약체결	2021.11.08.(월)~2021.11.10.(수) [3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36번지)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진행(10:00~14:00).

#### ■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으로 기관에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불가)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인터넷 특별공급 접수기관(금융결제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를 할 수 없음.
- 기관에서 선정한 예비추천자는 특별공급 추가당첨(접수미달 주택형 한정) 또는 통합 예비입주자로의 확정은 아니며, 특별공급 추가당첨 또는 통합예비입주자 추천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주체 추천결과에 따라 추가당첨자 및 통합예비입주자로 선정 또는 낙첨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유형별 배정세대수 내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② ①번에서 당첨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 시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4. 특별공급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인터넷 특별공급 접수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인터넷 청약 시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청약자 본인 검증 : 인터넷 특별공급 접수기관에서는 특별공급 청약 접수 시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확인 없이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접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자 접수방법 : 장애인,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인터넷 접수와 달리 신청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이 상이(10:00~14:00)하오니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청약신청자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명단 관리, 계약체결 불가)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청약접수내용 수정 및 서류반환(인터넷 청약자 견본주택 접수 시)이 불가함.

■ 구비서류(인터넷 취약자 건본주택 방문접수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본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발급[장애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제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청약한 경우 생략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이 추천한 추천명단 또는 추천서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10.07.)로, 출입국 기록출력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본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 5항의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설정하여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경우.
	○		자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 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경우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청약신청자	대리신청 시(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청약신청자)	청약신청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신청 불가)
		○	인장, 신분증(대리인)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

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5.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 사항**

견본주택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36번지

문의전화 : 033)253-0762